

의학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2003. 4. 21 제정
 2009. 7. 13 개정
 2017.12.01. 일부개정
 2020.01.29. 일부개정
 2020.08.28. 일부개정
 < 기금사업팀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의료원(산하운영기관 포함, 이하 “의료원”이라 함)에서 수행하는 교육 및 연구의 육성 발전을 위한 고려대학교 의학발전기금(이하 “의학발전기금”이라 함)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학발전기금과 그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 위원회에 적용되며,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의학발전기금’이라 함은 의료원의 교육 및 연구 등 의학발전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된 각종 기부금을 통칭하며,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또는 기타 연구·업무용 물품을 포함한다.

제4조 (계정) 출연된 의학발전기금은 의료원의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제5조 (기금의 사용) 의학발전기금은 다음의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의료원의 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
2. 의료원의 교육 발전을 위한 경비
3. 의료원의 연구 발전을 위한 경비
4.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제6조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은 용도와 사용 범위 또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학발전 일반기부금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 용도나 집행 부서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연한 기부금
2. 의학발전 지정기부금 : 기부자가 사용용도나 집행부서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부금
3. 의학발전 수증물품 : 기부자가 도서자료, 골동품, 고서화 등의 문화재, 실험 및

진료기자재 등 과 진료용 물품을 기증한 경우

4. 의학발전 부동산 : 기부자가 교육용 또는 수익용으로 부동산을 기증한 경우

제7조 (발전기금의 종류) 의학발전기금은 사용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 의학발전기금 : 기금 및 과실금을 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 시설 또는 지정용도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

2. 자본(영구) 의학발전기금 : 기금의 과실금으로만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기금

3. 목적성 의학발전기금 :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두 사용하는 기금

제 2 장 의학발전기금위원회 등

제8조 (의학발전기금위원회)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대학교 의학발전기금위원회(이하 “의학발전기금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9조 (기능) 의학발전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학발전기금의 설치, 모금, 사용에 관한 사항
2. 의학발전기금의 증식에 관한 사항
3. 의학발전기금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학발전기금 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의학발전기금위원회는 의무부총장, 의과대학장, 의무기획처장, 의학연구처장, 기금사업본부장, 안암병원장, 구로병원장, 안산병원장 등의 당연직 위원과 의무부총장이 위촉하는 10인 내외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무부총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의과대학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의학발전기금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기금사업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13조 (회의) ①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기금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의결 시에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 (KU MEDICINE 발전위원회) ① 의학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지원을 목적으로 교우, 사회 저명인사, 유관 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여 “KU MEDICINE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함) “를 설치한다.

② 발전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의학발전기금의 접수 및 관리

제15조 (의학발전기금관리) ① 의학발전기금의 조성과 관리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해 기금사업팀을 둔다.

② 기금사업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의학발전기금 조성활동의 지원 및 세부 업무
2. 의학발전기금 조성 기간 중의 수입금의 회계관리
3. 의학발전기금위원회의 세부 업무
4. 기타 의학발전기금 조성업무에 관한 사항

③ 의학발전기금 관리책임자는 의학발전기금위원회 간사로 한다.

④ 의학발전기금 관리책임자는 의학발전기금의 운용 방법을 정하여 의학발전기금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의결된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16조 (기부금의 접수와 관리) ① 의학발전기부금의 접수 및 관리는 기금사업팀에서 한다.

② 수증물품은 감정 평가액으로 산정하고, 소관 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부동산을 수증한 경우 기금사업팀에서 접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후속처리는 법인으로 이관한다. 이때 부동산의 자산 평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표 준액에 의한다.

④ 기부금의 모금 및 관리 등 비용의 부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 (영수증의 발급) 현금 또는 유가증권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로 영수증을 기금사업팀에서 발급하고, 부동산·도서자료·고서화·실험기자재 및 기타 물품 등을 기증한 자에게는 총장명의로 물품수령증을 발급한다.

제18조 (기금의 집행 및 보고) ① 의학발전 일반기부금은 의학발전기금위원회에서 사용 용도를 심의한 후 의무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② 의학발전 지정기부금은 의무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교비 사용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단, 장학기금은 의학발전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③ 의학발전 지정기부금은 해당 부서가 집행하되 10%의 간접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간접경비로 공제한 금액의 전부는 의학발전 일반기부금에 귀속시킨다.

④ 의학발전기금관리 책임자는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년도의 기금운용 사항을 의학발전기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부자에 대하여 기부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세부사항은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제20조 (기부 유치자에 대한 예우) 의학발전기금 조성에 직접 간여하여 상당액 이상의 기금

을 유치한 교직원에게는 별도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세부 사항은 본교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21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총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0조 제1항 개정, 제12조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0조 제1항 자구 수정, 제18조 제1항 내지 제2항 자구 수정, 제19조 자구 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8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조 내지 제3조 개정, 제5조 내지 제6조 개정, 제10조 내지 제13조 개정, 제14조 조 번호 및 명칭 변경, 제15조 내지 제18조 조 번호변경 및 개정, 제19조 내지 제20조 조 번호변경 및 자구수정, 제21조 조 번호 및 명칭 변경)